

‘경기도형 페이퍼컴퍼니 단속 모델’ 전국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추진 중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자, 기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앞서 경기도에선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지역제한경쟁입찰(추정가격 1억~10

국토부, 지자체에 요청

적격심사 1~3위 업체 대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점검

입찰 경쟁률 하락 가시적 성과

역원)에 응찰한 적격심사 1~3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입찰공고일 기준) 결과를 낙찰자 결정에 반영했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사

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하는 등 사법조치, 입찰참가제한, 낙찰배제 등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중점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 건설사 공공건설정책과 산하에 공정건설조사팀을 신설하

고 탐장을 포함한 9명의 인원이 페이퍼컴퍼니 단속만을 전담하고 있다.

국토부가 경기도 모델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려는 이유는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후 긍정적 효과가 여러모로 나타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입찰 공고문에 불이익을 명시하

면서 발주 3억원대 토목공사입 입찰 경쟁률은 지난해 10월 477대1에서 12월 48대1로 약 16% 줄어 들었다. 사전 단속과 응찰률 감소분을 합해 36% 수준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게 도의 평가다.

국토부가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진행한 또 다른 이유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현재 명시된 법적 권한이 없는 관계로 각 지자체 소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도 단속을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는 추세다. 앞서 국토부는 소속 지방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고강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공사’와 ‘암해~화원(4공구) 도로건설공사(1차분)’, ‘국도77호선 신안 암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공구·2공구)’ 등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대표 주관사는 물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사까지 모두 고강도 조사를 거쳤다.

임성엽기자 starleaf@

“시평 등급 갖춘 건설사에 ‘동일 잣대’ 적용은 곤란”

뉴스 Focus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 업계 반응

국토교통부에서 본격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 정책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정책 시행 여부를 놓고 장교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페이퍼컴퍼니’ 척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공능력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완비한 건설사에게서 전면입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종합건설사인 토건업체가 전기공사나 가스공사, 소방공사 등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공종을 수행했

을형회사 척결은 공감하지만 업종별로 등록기준 미달 점검 지자체 단속 정책은 이중규제

을 때 실사는 필요하지만, 토건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등기부등본 △

경기도시 페이퍼컴퍼니 단속 모델

단속 대상 : 지역제한경쟁입찰(추정가격 1억원~10억원) 응찰 적격심사 1~3위 업체

점검 대상 :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사입기본법 등록기준 충족 여부

단속 결과 : 370개사 중 75개 업체 적발(2019년 10월~2020년 7월) 입찰배제, 영입정지 등 행정처분



건축물대장 △건설기술인 배치현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11가지 서류를 토대로 이 등록기준이 허위인지 여부를 현장에 직접 공무원들을 파견해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업종별 협회에서 주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선 ‘페이퍼컴퍼니’ 단속 정책이 전국 지자체에 확대 운영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한 페이퍼컴퍼니가 일거에 적발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가 도내 건설사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업체를 보면 종합건설업체

는 25개사지만 전문업체는 57개사에 달했다. 전문업체 수가 종합 대비 2.28배 많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문건설업은 경영전문성이 종합업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전문건설업쪽 사업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